

#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하 남 시 의 회

#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16. 9.

발 의 자 : 문 외 숙 의원(인)

### 1. 개정이유

-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회기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1일로 변경함(안 제5조)

#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#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### 6. 예산수반 사항

### 7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(2016.9.7.~9.19.)

### 8. 부서협의 결과 : 해당없음

### 9. 기타 참고사항

### 10. 관련부서 : 경기도

하남시 조례 제 호

##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7월5일” 을 “6월1일” 로, “의회” 를 “본회의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5조(정례회 집회) (생략)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<u>7월5일</u>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<u>의회</u>의 의결로 9월 ·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5조(정례회 집회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6월1일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<u>본회의</u>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계법령

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·6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 <개정 2016.1.12.>

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